

의안번호	제 31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7. (제 회)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7. 10. 1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기
----------	---

제출일자 : 1997. 10. 1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95. 8. 4 개정 법률 제4970호), 같은법시행령('96. 1. 19 개정 대통령령 제1489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96. 2. 5 전문개정 환경부령 제18호)의 개정으로 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용어의 정의중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신설함.(안 제2조 제1호, 제2호)
- 나. 재활용품 종류에 “농업용비닐, 폐스티로폼”을 추가함.(안 제2조 제5호)
- 다. 시직영 수거용 봉투 사용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기집 앞에 배출 하도록 하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은 연탄재, 폐건전지등에 한함. (안 제4조제1항)
- 라. 폐기물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
- 마.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기준을 신설함. (안 제5조제3항)
- 바.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의 무단설치등을 규제하기 위한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설함. (안 제5조제4항)
- 사. 쓰레기 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용량별 모든규격을 구 비하여 소비자가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시 응하도록 함. (안 제13조)

- 아.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장 이용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20조
제1항제3호)

3. 법적근거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97. 7. 12—7. 31(20일간)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게재
다. 접수된 의견 : 없음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동조제1호, 동조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내지 동조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동조제4호 내지 동조제8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신설한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과 쓰레기봉투 사용불가능 생활폐기물로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에서 재활

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철재류, 농업용비닐, 페스티로폴등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7. “시 청소차수거용봉투”라 함은 시직영 수거방법에 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8. “대행업체 수거용봉투”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 및 동조제2호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②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은 사천시 전역이며,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일정기간 그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제목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반드시 묶어야 하며, 시청소차 수거용봉투를 사용시는 자기집 앞에 배출하고, 대행업체 수거용봉투를 사용시는 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거나 대행업체의 수거방법에 의한다. 다만, 연탄재, 폐건전지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재활용 가능쓰레기”를 “재활용품과 폐건전지”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과 폐건전지”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모든 폐기물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가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제목중 · 제5조제1항 · 제5조제2항 · 제6조제목중 · 제6조제1항 · 제6조제2항 · 제16조제목중 · 제16조제1항 · 제20조제1항 · 제20조제1항제1호 · 제20조제1항제2호 · 제20조제3항 · 제20조제4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을 “시장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보관 배출할 수 있도록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동조제4항, 동조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은 시·시행규칙 별 표5 및 동조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중용폐기물 수집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장소, 수량, 크기등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미 설치된 보관용기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7조제2항·제7조제3항·제8조중 “제17조”를 “제26조”로 하고, 제6조제3항중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7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의 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의”로 제7조제1항·제7조제2항·제7조제3항·제8조·제8조제2호·제8조제3호·제8조제4호·제16조제3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중 “제12조”를 “제17조”로 하고 제7조제3항중 “법 제45조”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일반,공동주택과 사업장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를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내로 제한하며”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13조제4항”을 “제5조의2 및 법 제1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며,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별표6”을 “별표5”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축잔재물”을 “건설폐기물”로 하고, “별표7”을 “별표6”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수욕장(시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한 지역)
5.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
6. 비지정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

되지 않은 지역중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

제19조제2항중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 270조)”을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당해 공공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별표7”을 “별표6”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다량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건축잔재물, 폐각류, 어구류 및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단, 다량”을 “건설폐기물, 어구류, 기타 폐기물및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등은 1톤이하를 반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동조제2항중 “다량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6”을 “별표5”로, “별표7”을 “별표6”으로 하며,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 제2조(정의) 이 조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 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 용 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 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 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 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쓰레 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 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 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신 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 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 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 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 외한 폐기물로서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과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 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하 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 물로 구분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사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 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현	행	개	정 (안)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과 쓰레기봉투 사용불가능 생활폐기물로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쓰레기”라 함은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철재류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5.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철재류, 농업용비닐, 페스티로폴등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5. “건축폐잔재물”이라 함은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블럭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라 함은 시의 타종식 수거방법에 의거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7. “시 청소차수거용봉투”라 함은 시직영 수거방법에 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7. “대행업체수거용 봉투”라 함은 시의 타종식 수거방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때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8. “대행업체 수거용봉투”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가정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 제1호의 생활폐기물 및 동조제2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행	개정 (안)
②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사천시 전역이며, 단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 사용자는 시 청소차에 직접 상차하고,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 사용자는 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거나 대행업체의 수거방법에 의한다. 단, 연탄재,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넣을수 없는 1킬로그램 미만의 일반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② (생략) ③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자에 시 청소차량에 상차하거나 분리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쓰레기등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은 사천시 전역이며,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일정기간 그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 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반드시 묶어야 하며, 시 청소차 수거용봉투를 사용시는 자기집 앞에 배출하고, 대행업체 수거용봉투를 사용시는 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거나 대행업체의 수거방법에 의한다. 다만, 연탄재, 폐건전지등은 예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④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 모든 폐기물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가연성, 재 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 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등의 종류별 수거일, 수 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 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등 지역 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일 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 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 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 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보관 배출할 수 있도 록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②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 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현행	개정 (안)
(신설)	1. 법 제16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5 및 동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3. 공중용폐기물 수집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설치장소, 수량, 크기 등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 설치된 보관용기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생활폐기물 제26조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는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활폐기물

현행	개정 (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처리업 허가)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설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제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제26조 폐기물 폐기물 ② ... 제26조 제17조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③ ... 폐기물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 폐기물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 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u> 처리업자에 대하여 <u>일반폐기물</u> 처리 능력향상과 시민 편의도모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6조 제17조 폐기물 폐기물 1. (생 략) 2. <u>일반폐기물</u>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사항 3. <u>일반폐기물</u>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기타 <u>일반폐기물</u> 처리에 수반하 는 업무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6조 제17조 폐기물 폐기물 1. (현행과 같음) 2. <u>폐기물</u> 3. <u>폐기물</u> 4. . . . <u>폐기물</u>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6조 제17조 폐기물 폐기물 1. (현행과 같음) 2. <u>폐기물</u> 3. <u>폐기물</u> 4. . . . <u>폐기물</u>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 와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는 일반·공동주택과 사업장으로 세분 할 수 있으며, 배출쓰레기는 종 류별 및 용도별 봉투에 각각 담아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 와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는 일반·공동주택과 사업장으로 세분 할 수 있으며, 배출쓰레기는 종 류별 및 용도별 봉투에 각각 담아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 와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는 일반·공동주택과 사업장으로 세분 할 수 있으며, 배출쓰레기는 종 류별 및 용도별 봉투에 각각 담아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 와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는 일반·공동주택과 사업장으로 세분 할 수 있으며, 배출쓰레기는 종 류별 및 용도별 봉투에 각각 담아야 한다.	
제1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비하여 야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u>	제1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비하여 야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 (안)
제16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수료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은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생략) ③건축잔재물, 폐각류, 어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체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2 및 법13조 생활폐기물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별표5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폐기물 폐기물 별표6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해수욕장(시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한 지역) 5.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 6. 비지정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u>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u>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u>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u> ③ 시장은 <u>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당해 공공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u>	
제20조(처리장의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u>일반폐기물</u>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u>별표7</u>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u>일반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허가</u>를 받고 <u>다량 일반폐기물</u>을 반입하는 자 2. 일반인이 <u>일반폐기물</u>을 다량 배출할 경우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건축 잔재물, 폐각류, 어구류 및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단, 다량배출 신고를 필한 자에 한한다.		제20조(처리장의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u>생활폐기물</u> <u>별표6</u> 1. <u>생활폐기물</u> <u>생활폐기물등</u> 2. <u>생활폐기물</u> <u>건설 폐기물, 어구류, 기타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u>을 반입하는 자. 다만, 폐기물	

현행	개정 (안)
(신 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등은 1톤이하를 반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다량 일반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 계약시 포함된 처리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일반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④ 시장은 처리장에 일반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 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별표 1]

개 정 (안)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종류(ℓ)	규격(cm) (가로×세로×두께)	용도
5	$26 \times 46.5 \times 0.02$	시청소차 수거용봉투 : 유백색
10	$33 \times 56.5 \times 0.02$	
20	$42 \times 69.5 \times 0.025$	공공용 봉투 : 옅은 청색
50	$56 \times 91.5 \times 0.035$	대행업체 수거용봉투 : 옅은 노랑색
100	$71 \times 113.5 \times 0.045$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표시의 평봉투는 굵은 선, 절취형 봉투는 평봉투형으로 하되,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 반올림 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별표 2]

개 정 (안)

쓰레기봉투의 사양(5 ℓ ,10 ℓ ,20 ℓ 용)

사	천	시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시	의	명 칭
연	락	처
제작업체명		

쓰레기봉투의 사양(50 ℓ ,100 ℓ 용)

사	천	시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시	의	명 칭
연	락	처
제작업체명		

[별표 5]

개 정 (안)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징수기준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3,000	
에 어 컨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 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농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서 랫 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신 발 장	모든 규격	2,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장 식 장	모든 규격	4,000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응 접 세 트	장 의 자 의 자	5,000 2,000	
침 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캐 비 넷	모든 규격	4,000	
화일 캐비넷	4단 이상 3단 이상	3,000 2,000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피 아 노	이프라이트 그 랜 드	10,000 15,000	
오 르 간	모든 규격	4,000	
규격봉투 사용불가 능 배출폐기물(깨 진 유리, 이사, 집 수리,정원손질등으 로 일시에 배출되 는 생활폐기물)	40Kg입 마대당	1,000	

(주)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표 6]

개 정 (안)

건 설 폐 기 물 등 처 리 수 수 료

대 상	기 준	처 리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u>건설폐기물 (콘크리트 목재류, 석재류, 토사류등)</u>	톤 당	15,000	—	15,000
어 구 류	"	15,000	—	15,000
<u>기 타 폐 기 물</u>	"	15,000	—	15,000

※ 비고 : 1. 건설폐기물중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는 수수료
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매립 이외의 별도의 과채, 소각등 처리비가 소요될 시 처리
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3. 1톤이하의 폐기물에 한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
한다.